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0. . . (제 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공건축 설계공모 정보의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설계공모 시행 공고와 심사결과를 「건축법」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고, 건축과정에서의 설계자 참여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대상 변경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공건축 설계공모 정보의 접근성 및 투명성 강화(안 제17조제7항)

공공기관은 설계공모 시행 공고 및 심사결과를 「건축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세움터)에 공개하여야 함

나. 설계자 참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고시(안 제19조제2항)

설계자 참여(설계의도 구현)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

다.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대상 변경(안 제21조제1항제1호)

건축공간연구원 독립 법인화에 따라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대상을

‘국토연구원’에서 ‘건축공간연구원’으로 변경

대통령령 제 호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7항) 중 “제6항까지”를 “제7항까지”로 한다.

⑦ 공공기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설계공모의 시행일까지 해당 설계공모의 시행 공고를 「건축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개하여야 하며, 설계공모의 심사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와 같다”를 “호의 사항을 포함하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국토연구원”을 “건축공간연구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조(설계공모방식의 우선 적용 대상 등) ① ~ ⑥ (생략)	제17조(설계공모방식의 우선 적용 대상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설>	⑦ 공공기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설계공모의 시행일까지 해당 설계공모의 시행 공고를 「건축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개하여야 하며, 설계공모의 심사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모심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⑧ ----- 제7항까지 ----- ----- ----- ----- -----.
제19조(건축과정에서의 설계자 참여 기준 등) ① (생략)	제19조(건축과정에서의 설계자 참여 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설계자의 참여에 관한 내용 및 책임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 ----- 호의 사항을 포함하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공공건축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21조(공공건축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 ----- -----.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1. ----- 건 축공간연구원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건축문화경관과	
연 락 처	(044) 201-3778